

사회복지 주간 동향(24.1.15.~1.19.)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후원 물품 전달식 열어

< 후원품은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



-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서 11톤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힘
 -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관계자들은 이날 이상일 시장을 직접 만나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짐
 - 전달받은 물품은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
 - 이상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된 물품을 전달한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 감사하다”며 “추운 겨울 이웃을 위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나눔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기업에서 다양한 후원 물품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로, 지난해 2월 삼푸와 세제 등 생필품 1500여 박스를 용인특례시에 전달한 바 있음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4년부터 다동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 '난임·다동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 <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

2024년부터 다동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동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지자체별 상이)
- *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동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동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동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
- 아올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함,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됨
 -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두고 있음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 되는 노인 관련 사업추진 비영리법인은 56개소(‘23.6월 기준, 붙임 참조)

참고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요(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 기본 개요
 - (목적) 노인 관련 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 (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 19에서20
 - (대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
 - (제한 기관) 제39조의17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노인 관련 기관
-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제5항 및 제6항
 - (노인 관련 기관의 장) 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점검 주기 정하여 조회
 - (관할행정기관의 장)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 2제2항제3호)
- (폐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법 제 39조의17제9항)
 -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가능(법 제 39조의17제10항)
- (해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법 제39조의17제9항)
 -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1항)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8만 9,800원 인상된 71만 3,100원 지급 >
 <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 >

-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름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
 -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됨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원/ 월)	2023년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9	5,420,986
	2024년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금융 재산 (원)	2023년	8,077,000	9,456,000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2024년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원/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
-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13.6%)되어 3,585억 원으로 늘어남

※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됨(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음, 위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거라 예상

·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③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④ 양육비용 부담경감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1.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함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함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2.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음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됨,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됨(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됨
-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됨
- *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참고

※ 보도자료 참조(보유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5 증양정부 복지현안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67.1% A등급, 전기 대비 5.7%p ↑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 7개 유형 총 1,868개소 평가 >

< 미흡시설(D,F등급) 컨설팅 등 통해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강화 >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전기 평가(2020년도) 대비 우수시설(A등급)이 5.7%p 증가하고, 최하위시설(F등급)이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2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장애인복지관(155개소), 노숙인생활시설(103개소), 정신요양시설(59개소), 정신재활시설(155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529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691개소),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177개소)

· 서울·경기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시·도 자체평가(2018년~)

- 이 중 1,254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20년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

[전기(2020) 대비 등급별 시설 수 및 분포]

(단위 : 개소, %)

	전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증감	123	184 (5.7%p)	△5 (△1.7%p)	3 (△0.3%p)	△14 (△0.9%p)	△45 (△2.8%p)
2023	1,868	1,254(67.1)	384(20.6)	126(6.7)	46(2.5)	58(3.1)
2020	1,745	1,070(61.4)	389(22.3)	123(7.0)	60(3.4)	103(5.9)

- 7개 유형 중 4개 일반시설 유형(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총점 평균은 91.6점으로 전기(90.9점) 대비 0.7점 상승하였고, 3개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총점 평균은 89.2점으로 전기(86.1점) 대비 3.1점 상승

[전기(2020) 대비 일반시설 4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단위 : 점)

	전체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증감	0.7	△1.3	2.7	0.6	1.2
2023	91.6	93.5	86.3	93.3	92.7
2020	90.9	94.8	83.6	92.7	91.5

[전기(2020) 대비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 평균점수 증감 현황] (단위 : 점)

	전체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증감	3.1	△0.2	6.1	0.3
2023	89.2	89.5	88.5	91.4
2020	86.1	89.7	82.4	91.1

-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36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632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
- 기존 평가시설(90.4점)이 신규 평가시설(85.7점) 대비 평균 점수 4.7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신규·기존시설의 시설유형별 평균점수 비교] (단위 : 점)

	전체	장애인 복지관	노숙인 생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생활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정신재활 공동생활 가정
차이	4.7	1.5	32.5	-	11.8	2.3	5.9	4.9
기존	90.4	93.6	87.3	93.3	93.3	89.9	89.2	92.3
신규	85.7	92.1	54.8	-	81.5	87.6	83.3	87.4

- 이번 평가 실시 기관 중 전기(2020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로서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4개소였으며, 이 중 81개소(65.3%)가 이번 평가에서 2~3등급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 아울러 2023년 평가 결과 미흡 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 등 미흡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
- 또한,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
 -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 지급
 - 평가 상위시설: 700만 원(공동생활가정 1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공동생활가정 50만 원)
 -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 중인 시설, 평가등급 미흡(D·F등급) 시설 제외
-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또한 비평가시설은 희망이음을 통해 상세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일정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시설에게 별도 안내될 예정
-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하며, 2025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대해 평가할 예정

※ 보도자료 참조(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6 중앙정부 복지현안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필요한 곳에 어린이 집을 늘려나갑니다

- < 적재적소에 540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보육 접근성 확대 >
- < 인센티브 도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인프라 유지·확충 도모 >

- * 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8,954개소로 2022년 12월 (30,923개소)보다 1,969개소 줄었음, 전국 어린이집은 매년 2천여 개소씩 감소 추세
 - 어린이집 현황(개소수): ('20)35,352→('21)33,246→('22)30,923→('23)28,954

[전국 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개소수)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12.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21.12.	33,246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22.12.	30,923	5,801	1,254	610	9,726	12,109	132	1,291
'23.12.	28,954	6,187	1,206	551	8,886	10,692	124	1,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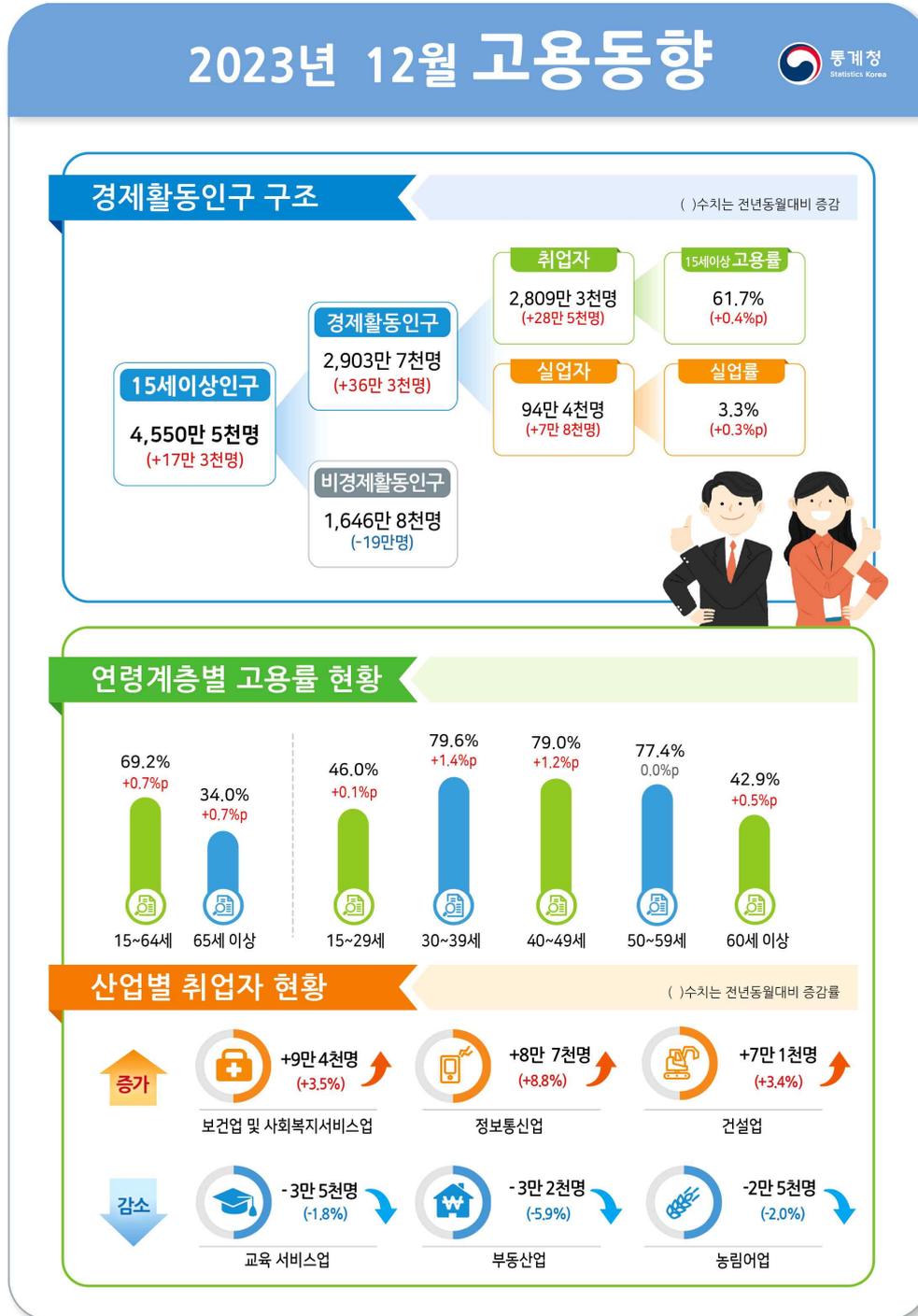
- 저출생에 따른 보육시설 감소 추세에 따라 부모가 정작 아이를 맡길 때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모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총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2024년 예산 416.5억원)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보육수요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 도모,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 (435개소)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0)20.3→('21)22.7→('22)25.3→('23)28.3
- 또한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신규로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
 - (0세반) 1명 부족분 62.9만 원, (1세반) 1~2명 부족분 34.2만~68.4만 원,
 - (2세반) 1~3명 부족분 23.2만~69.6만 원

※ 보도자료 참조(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